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우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31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4일

발 의 자 : 김경우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강동길, 권수정, 김경영,
문영민, 이광성, 이동현,
이성배, 이태성, 이호대,
임종국, 장상기, 한기영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동법 시행령 및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재활용 물품에 대한 감정평가의 주체를 감정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, 법령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의 처분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함(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중 “감정평가법인(이하 "감정기관"이라 한다)”을 “감정평가업자”로 한다.

제17조제5항 중 “감정기관에서”을 “감정평가업자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~③(생략)</p> <p>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장부상 취득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<u>감정평가법인(이하 "감정기관"이라 한다)</u>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<u>감정기관에서</u>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이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.</p> <p>⑥~⑧ (생략)</p>	<p>제17조(불용품의 매각) 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장부상 취득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<u>감정평가업자</u>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<u>감정평가업자가</u>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이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.</p> <p>⑥~⑧ (개정안과 같음)</p>